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525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6. 26 선고 2023나1310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52507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현

담당변호사 김민기, 정수용

변론종결2023. 5. 12.

판결 선고2023.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05,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채권자 회사'라고 한다)은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와 2019.

6. 21. 안성시 E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3,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2019. 9. 25. 경기도 양평군 F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3,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채무자 회사는 2021. 3.

8.까지 채권자 회사에게 161,000,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235,000,000원을 미납하고 있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21. 12. 30. 피고와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97,600,000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2. 1. 3. 해지로 인하여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라. 채권자 회사는 2022. 2.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채무자 회사는 2022. 6. 21. 인천지방법원 2022하합41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그 후 채권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나 제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가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8호증, 을나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은 36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235,000,000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 248,000,000원, ③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109,0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특정한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회사 등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로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의한 부인 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 제2 내지 4호에 따른 부인 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J협회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사무실 이전 공문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 을나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과 K, 주식회사 L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로서는 이들 채무에 I에 대한 채무만 더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례적으로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4일 후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인권행사의 효과

1)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인권 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매매 후 2022. 1. 3. 해지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부인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3. 4.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2023. 4.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6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2. 11. 23.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51,594,29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108,405,703원(= 360,000,000원 ~ 251,594,297원)의 한도에서 부인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 다음 날인 2023. 4. 13.부터¹⁾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후

판사오승준

판사인자한

1)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등 참조).